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9249(본소) 이혼등
2014드단202246(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김BB

사 건 본 인 1. 김CC
2. 김DD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5. 3. 24.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 김CC를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3. 25.부터 2030. 11. 23.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2. 8. 7.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1)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 2)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3박 4일간(첫날 11:00부터 마지막 날 17: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원고(반소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6.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김DD을 인도하라.

2.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647,14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김CC를 인도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경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 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2) 원고와 피고는 부산 동래구 *****번길 **-1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위 주택의 2층에는 원고의 부모와 누나가, 1층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 거주하였다.

3) 피고는 2012년 5월경 친정으로 가 1주일을 보내고 오는 등 피고와 다툰 후에 수회에 걸쳐 친정으로 간 적이 있고, 원고가 지급하는 생활비 월 250만 원이 적다며 원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다.

4) 피고는 2012년 6월경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가사 및 육아를 별로 돕지 않았다.

5)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분가를 요구하였다.

6)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와 분가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해 2월경 처가로 가서 사건본인 김CC를 데리고 갔다.

7) 원고는 2014. 4. 29.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7. 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8)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 김CC를, 피고가 사건본인 김DD를 양육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나, 쌍방이 자신만의 의견이나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분가, 가사 등과 관련한 갈등을 진지한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함으로써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지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모두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보다는 피고가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은 점, 사건본인들의 상호 교감 및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점, 사건본인들이 아직 만 4세도 되지 않은 딸들로서 양육자의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는 원고가 더 여유가 있으나 피고의 경제적인 문제는 원고의 양육비 지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성별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므로, 현재 사건본인 김CC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김C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연령·건강 상태·현재 생활환경 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경제적 능력·건강상태,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사건본인 김CC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30. 11. 23.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김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32. 8. 7.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면접교섭(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성별·생활환경·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친

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곤